

춘천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3나344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청구]

재판경과

춘천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3나34405 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3. 8. 23 선고 2022가단1321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김상배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연

변론 종결 2024. 3. 28.

판결 선고 2024. 4. 25.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3. 8. 23. 선고 2022가단13211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태백 등기소 2019.

9. 11. 접수 제452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는 원고에게,

1) 주위적으로 별지2 보험계약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관하여 각 보험자에 대해 각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를 모두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으로 별지2 보험계약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권리를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별지2 표 기재 각 보험자에게 위 권리 양도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3 보험계약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C 주식회사[서울 영등포구 W, 27층]에 대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태백등기소 2019. 9. 11. 접수 제452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①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고, ② 별지2 보험계약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관하여 주위적으로는 각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명의 변경을, 예비적으로는 위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권리 양도 및 각 보험자에 대한 권리 양도 통지를 구하고, ③ 별지3
보험계약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자에 대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그중 위 ① 청구는 기각하고, 위 ② 청구 중 주위적 청구, 위 ③ 청구는 인용하였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① 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조미연

판사배성준

판사허경은

별지